(별지 제22호 서식)

처리기간 : 5일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담보제공 생략자 분할·분할합병 신고서

구 분			변 경 전	변 경 후	
				담보제공 생략자	분할·분할합병업체
관할세관					
주소					
대표자			(인)	(인)	(인)
상호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	
사업자등록수					
통관고유부호					
수출입실적등	수출실적등	년도			
		년도			
		년도			
	수입실적	년도			
		년도			
		년도			
총 매출액		년도			
		년도			
		년도			

「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사의 분할·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고자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
세 관 장 귀 하

위와 같이 분할·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도록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세 관 장 직인

귀 하

첨부서류
1. 위임장(위임의 경우에 한함)
2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)
3.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※ 담보제공 생략자의 수출입실적 등을 분할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실적만큼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액 관리하게 됩니다. 따라서 모기업의 담보제공 생략업체 지정요건 유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